

【 문제-1 】 (30점)

甲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차선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기 시작하는 중에, 차의 오른쪽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丙의 오토바이에 뒷부분을 부딪쳤고, 이 충돌로 말미암아 튀어나온 파편들에 甲이 맞아 큰 상해가 생긴 것이다. 甲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2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乙과 丙은 저마다 甲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결국 甲은 乙과 丙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여 치료비와 일실회의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甲은 피고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라 주장하면서 1억 원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쪽에 더욱 힘을 기울였고, 제1심법원은 믿을만하다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 이에 乙은 오직 甲의 중대한 과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과 적어도 그 때문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하였고, 甲이 손해라며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는 성립할 수 없다는 충분한 근거를 실증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기도 하였다. 丙은 변론기일마다 출석하여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甲에게 있으며 피해 금액도 너무 많이 내세운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였을 뿐, 그밖에는 답변서를 비롯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乙에 대하여는 청구 기각을 하고, 丙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1)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근거를 검토하고, 복수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통상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 공동소송, 선택적 공동소송 가운데 어떤 형식이 적절한지 설명하시오. (10점)
- (2) 소송에서 丙이 보인 태도를 고려하여 제1심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10점)
- (3) 甲은 乙에 대한 패소 부분을 항소하였고, 乙과 丙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丙은 부대항소를 하였고, 항소심법원은 丙의 패소 부분도 심판의 범위에 넣어 판결하였다. 항소심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10점)

【 문제-2 】 (20점)

2023. 6. 3. 甲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乙에게, 전시 중인 고려청자 X는 甲이 아버지 丁으로부터 상속받은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임대료를 납부하든지 아니면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乙은 고려청자 X는 丙으로부터 무상으로 전시를 허락 받은 물건이라 주장하였다. 甲이 丙에게 문의하자, 丙은 2014년 丁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5. 1. 1.부터 20년 간 고려청자 X를 임차하기로 계약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甲이 계약서나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니, 丙은 오래돼서 계약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甲 또한 소유권자라는 증거는 없지 않은가 하며 버텼다. 甲은 乙을 상대로 고려청자 X에 대한 소유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소유권에 터잡아 고려청자 X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는 임차권의 존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丙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존재를 자세한 상황과 함께 증언하였지만 계약서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결국 甲이 승소하였고, 2024. 11.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고려청자 X는 소송에 앞서 이미 丙의 수중에 가 있었다. 2025. 7. 9. 甲은 丙을 상대로 고려청자 X의 반환 및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고려청자 X에 대한 丙과 丁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앞에서 丙이 甲에게 한 진술과 같았다. 甲은 그 오랫동안 없다가 이제야 나타난 문서는 위조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아버지의 필적이 아닌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甲은 고려청자 X에 대한 임대차 관계의 부존재는 이미 판정이 이루어진 사안이며, 전소에서 제출되지 못한 그 계약서는 이 소송에서 효력이 차단된다고도 주장하였다. 계약서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丙과 丁 본인의 기명과 인장이 맞다고 판명되었다.

- (1) 후소의 소송에서 甲이 주장한 사항들이 갖는 소송법상의 의미를 서술하고 평가해 보시오. (10점)
- (2) 후소의 소송에서 丙이 문서 제출로 증명하려는 사실이 증명책임의 분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술하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검토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甲은 친구 乙의 요청을 받고 乙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乙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급기야 甲의 연락을 피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甲은 2025. 4. 7. 乙을 상대로 대여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A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 A소의 소송계속 중 乙은 자신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乙은 甲을 상대로 위 3억 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B소'라 한다)를 다른 법원에 별소로 제기하였다. 甲은 “이 B소의 소송물은 A소에서 乙이 상계항변을 하면서 자동채권으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 자꾸 이러한 소를 제기하면 어떡하느냐”는 주장을 하였다. B소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A소는 여전히 소송계속 중에 있다. 甲의 주장의 소송법상 의미를 파악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시오. (10점)
- (2) A소는 제1심에서 甲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25. 12. 11.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은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甲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C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C소의 소송에서 甲은 A소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丙은 이 준비서면을 2026. 3. 6.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나 이를 乙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 乙은 2026. 6. 4. 길에서 우연히 甲을 만나 A소에 대해 전해 들었고, 즉시 법원으로 가서 A소의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소장부분을 비롯한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乙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탓에 A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제서야 불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6. 6. 17. A소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乙의 항소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10점)
- (3) A소는 제1심에서 대여금채권의 불성립을 이유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甲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甲과 乙이 이의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D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乙은 재소금지에 저촉되므로 D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0점)

【 문제-4 】 (20점)

보험회사 甲은 乙이 보험사고로 사망하면 乙의 단독상속인 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후 乙이 보험사고를 당해 사망하였고, 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던 丙이 甲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甲은 보험금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이견이 있음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甲과 丙 사이에서 이러한 다툼이 지속되자 결국 甲은 丙을 상대로 甲이 丙에게 지급할 보험금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 丙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자신은 甲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甲이 丙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채무는 2억 원이라는 심증을 형성하였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검토하고, 제1심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검토하시오. (12점)
- (2) 제1심에서 甲과 丙 사이에 보험금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결국 甲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丙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丙은 甲을 상대로 보험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반소의 제기에 대해 甲은 동의를 한 바 없다. 丙이 제기한 반소는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8점)